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	수정 후															
61p 번호 : 13	문제-표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대상 품목</th><th>대상 재해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적과전 종합위험</td><td>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</td><td>·적과전 : ·적과후 :</td></tr><tr><td>(특약) 나무보장</td><td>·적과전(특약) : ·적과후(특약) :</td></tr></table>	구 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적과전 종합위험	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	·적과전 : ·적과후 :	(특약) 나무보장	·적과전(특약) : ·적과후(특약) :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대상 품목</th><th>대상 재해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적과전 종합위험</td><td>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</td><td>·적과전 : ·적과후 :</td></tr><tr><td>(특약) 나무보장</td><td>·적과전(특약) :</td></tr></table>		구 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적과전 종합위험	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	·적과전 : ·적과후 :	(특약) 나무보장	·적과전(특약) :
		구 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															
		적과전 종합위험	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	·적과전 : ·적과후 :																
			(특약) 나무보장	·적과전(특약) : ·적과후(특약) :																
		구 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															
		적과전 종합위험	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	·적과전 : ·적과후 :																
(특약) 나무보장	·적과전(특약) :																			
[정답]			[정답]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대상 품목</th><th>대상 재해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적과전 종합위험</td><td>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</td><td>·적과전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 ·적과후 : 태풍(강풍), 우박, 화재, 지진, 집중호우, 일소피해, 가을동상해</td></tr><tr><td>(특약) 나무보장</td><td>·적과전(특약) : 태풍, 우박, 집중호우, 지진, 화재 한정보장 ·적과후(특약) : 가을동상해, 일소피해 부보장</td></tr></table>	구 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적과전 종합위험	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	·적과전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 ·적과후 : 태풍(강풍), 우박, 화재, 지진, 집중호우, 일소피해, 가을동상해	(특약) 나무보장	·적과전(특약) : 태풍, 우박, 집중호우, 지진, 화재 한정보장 ·적과후(특약) : 가을동상해, 일소피해 부보장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대상 품목</th><th>대상 재해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적과전 종합위험</td><td>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</td><td>·적과전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 ·적과후 : 태풍(강풍), 우박, 화재, 지진, 집중호우, 일소피해, 가을동상해</td></tr><tr><td>(특약) 나무보장</td><td>·적과전(특약)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</td></tr></table>		구 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적과전 종합위험	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	·적과전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 ·적과후 : 태풍(강풍), 우박, 화재, 지진, 집중호우, 일소피해, 가을동상해	(특약) 나무보장	·적과전(특약)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		
구 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																	
적과전 종합위험	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	·적과전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 ·적과후 : 태풍(강풍), 우박, 화재, 지진, 집중호우, 일소피해, 가을동상해																		
	(특약) 나무보장	·적과전(특약) : 태풍, 우박, 집중호우, 지진, 화재 한정보장 ·적과후(특약) : 가을동상해, 일소피해 부보장																		
구 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																	
적과전 종합위험	사과, 배, 단감, 떨은감	·적과전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 ·적과후 : 태풍(강풍), 우박, 화재, 지진, 집중호우, 일소피해, 가을동상해																		
	(특약) 나무보장	·적과전(특약) : 자연재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																		
수정 사유			문제 오류											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	수정 후		
141p 번호 : 18	정답	수정 전	보 장	가입대상 품목	보장개시	보장종료	
			종합위험 생산비 보장	고랭지배추	정식완료일 24시 다만,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,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·고랭지배추 :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·가을배추 : (㉠) ·월동배추 : (㉡) ·봄배추 : (㉢) · 대파 : (㉤) ·단호박 : (㉥) ·양상추 :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	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 날 24시	
				가을배추		(㉠)	
				월동배추		(㉡)	
				봄배추		(㉢)	
				대파		(㉤)	
				단호박		(㉥)	
				양상추		(㉦)	
			[정답] ㉤ 판매개시연도 5월 20일				
			수정 후	보 장	가입대상 품목	보장개시	보장종료
종합위험 생산비 보장	고랭지배추	정식완료일 24시 다만,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,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·고랭지배추 :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·가을배추 : (㉠) ·월동배추 : (㉡) ·봄배추 : (㉢) · 대파 : (㉤) ·단호박 : (㉥) ·양상추 :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		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 날 24시			
	가을배추			(㉠)			
	월동배추			(㉡)			
	봄배추			(㉢)			
	대파			(㉤)			
	단호박			(㉥)			
	양상추			(㉦)			
[정답] ㉤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							
수정사유	정답 오류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
401p 번호 : 16	해설	16 종합위원 수확감소보정방식 비 품목에서 사고가 접수된 농지의 수량요소조사 방법에 의한 수확량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확량과 피해를 구하시오. [기출14] <table><tr><td>평년수확량</td><td>2,100kg</td></tr><tr><td>표준수확량</td><td>2,000kg</td></tr><tr><td>조사수확비율</td><td>70%</td></tr><tr><td>미보상비율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피해면적 보정계수</td><td>1.1</td></tr></table> (1) 수확량(단, kg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. 예시 : 994.55kg → 995kg) (2) 피해율(단, %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. 예시 : 12.345% → 12.3%) [해설] (1)수확량 : 1,694kg (2)피해율 : 15.5% [해설] (1)수확량 $\text{조사수확량(kg)} = \text{표준수확량(kg)} \times \text{조사수확비율(\%)} \times \text{피해면적 보정계수}$$= 2,000\text{kg} \times 70\% \times 1.1 = 1,694\text{kg}$ (2)피해율 $\text{피해율(\%)} = (\text{평년수확량} - \text{수확량} - \text{미보상금수량}) \div \text{평년수확량}$$\text{미보상금수량} = (\text{평년수확량} - \text{수확량}) \times \text{미보상비율}$$= (2,100\text{kg} - 1,694\text{kg}) \times 20\% = 81\text{kg} \text{ (※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}$$\text{피해율(\%)} = (2,100\text{kg} - 1,694\text{kg} - 81\text{kg}) \div 2,100\text{kg} = 0.15476 = 15.5\% \text{ (※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}$	평년수확량	2,100kg	표준수확량	2,000kg	조사수확비율	70%	미보상비율	20%	피해면적 보정계수	1.1	16 종합위원 수확감소보정방식 비 품목에서 사고가 접수된 농지의 수량요소조사 방법에 의한 수확량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확량과 피해를 구하시오. [기출14] <table><tr><td>평년수확량</td><td>2,100kg</td></tr><tr><td>표준수확량</td><td>2,000kg</td></tr><tr><td>조사수확비율</td><td>70%</td></tr><tr><td>미보상비율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피해면적 보정계수</td><td>1.1</td></tr></table> (1) 수확량(단, kg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. 예시 : 994.55kg → 995kg) (2) 피해율(단, %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. 예시 : 12.345% → 12.3%) [해설] (1)수확량 : 1,694kg (2)피해율 : 15.5% [해설] (1)수확량 $\text{조사수확량(kg)} = \text{표준수확량(kg)} \times \text{조사수확비율(\%)} \times \text{피해면적 보정계수}$$= 2,000\text{kg} \times 70\% \times 1.1 = 1,694\text{kg}$ (2)피해율 $\text{피해율(\%)} = (\text{평년수확량} - \text{수확량} - \text{미보상금수량}) \div \text{평년수확량}$$\text{미보상금수량} = (\text{평년수확량} - \text{수확량}) \times \text{미보상비율}$$= (2,100\text{kg} - 1,694\text{kg}) \times 20\% = 81\text{kg} \text{ (※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}$$\text{피해율(\%)} = (2,100\text{kg} - 1,694\text{kg} - 81\text{kg}) \div 2,100\text{kg} = 0.15476 = 15.5\% \text{ (※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)}$	평년수확량	2,100kg	표준수확량	2,000kg	조사수확비율	70%	미보상비율	20%	피해면적 보정계수	1.1
평년수확량	2,100kg																						
표준수확량	2,000kg																						
조사수확비율	70%																						
미보상비율	20%																						
피해면적 보정계수	1.1																						
평년수확량	2,100kg																						
표준수확량	2,000kg																						
조사수확비율	70%																						
미보상비율	20%																						
피해면적 보정계수	1.1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해설 오류														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68~469p 번호 : 20	해설	20 특정위원회로 인상등록 허가필시설(2형)에 관한 내용이다. 태풍으로 인상 허가필시설에 일부 파손 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. 가입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① 평가율, ② 손해액, ③ 자기부담금, ④ 보험금, ⑤ 잔존보험가입금액을 계산과정과 답을 각각 쓰시오. ○ 보험가입내용 <table><tr><th>재해당수</th><th>당당 면적(㎡)</th><th>시설 재료</th><th>설치비율(원/㎡)</th><th>설치 연월</th><th>가입금액(원)</th></tr><tr><td>2,000</td><td>8.3</td><td>목재</td><td>5,500</td><td>2022.6</td><td>39,930,000</td></tr></table> ※ 보험가입 시기는 2023년 11월로 함 ○ 보험사고내용 <table><tr><th>과손당수</th><th>사고월년</th><th>사고 연월</th></tr><tr><td>800만(일부 과손)</td><td>태풍</td><td>2024.7</td></tr></table> ※ 2024년 설치비율은 설치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함 ※ 손해액과 보험금은 원 단위 이하 버림 [답] ① 평가율 : 13.33% ② 손해액 : 12,584,480원 ③ 자기부담금 : 100만원 ④ 보험금 : 11,584,480원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: 23,010,000원 [해설] ① 평가율 원단위 평가상과를 적용하여,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. 평가율 = 경과기간 × 경년평가율 = 1년 × 13.33%/년 = 13.33% • 경과기간 = 2023년 11월 - 2022년 6월 = 1년 5월 = 1년 ※ 평가필시설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만기까지연도 11월 1일에 보장제시하고, 이듬해 10월 31일 24시에 보장종료한다. • 경년평가율 <table><tr><th>유 형</th><th>내용연수</th><th>경년평가율</th></tr><tr><td>목재</td><td>8년</td><td>13.33%</td></tr><tr><td>철근</td><td>10년</td><td>4.44%</td></tr></table> ② 손해액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평가상과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. 다만,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%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를 적용하지 않고,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%를 초과하면서 평가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%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%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. ③ 피해액 제조당가액으로 산출된 피해액을 산정한다. 제조당가액은 단위면적(1㎡)당 설치비율에 재해면적(㎡)을 곱하여 산출한다. 800만 × 3.2㎡/만 × 5,500원/㎡ = 14,520,000원 ④ 평가후 피해액 = 피해액 × (1 - 평가상과율) = 14,520,000원 × (1 - 13.33%) = 12,584,484원 = 12,584,480원(※ 원 단위 이하 버림) ⑤ 제조당가액 = 2,000만 × 3.2㎡/만 × 5,500원/㎡ = 39,930,000원 ⑥ 보험가액 = 제조당가액 × (1 - 평가상과율) = 39,930,000원 × (1 - 13.33%) = 34,607,331원 = 34,600,000원(※ 원단위 이하 버림) ⑦ 보험가입금액 = 제조당가액 × (1 - 평가상과율) = 39,930,000원(※ 원단위 이하 버림) = 39,930,000원 × (1 - 13.33%) = 34,600,000원(※ 원단위 이하 버림) ※ 인상 허가필 시설의 경우 기평가보험으로 제조당가액에서 평가상과를 적용한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보험가액 = 보험가입금액이다. ⑧ 보험가액의 20% = 34,600,000원 × 20% = 6,920,000원 ⑨ 손해액 = 12,584,480원(∵ 평가후 피해액 > 보험가액의 20%) ④ 자기부담금 10만원 ≤ 손해액 × 10% ≤ 100만원 즉 14,520원 손해액의 10%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되 손해액의 10%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을 적용하여, 손해액의 10%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자기부담금으로 100만원을 적용한다. 자기부담금 = 12,584,480원 × 10% = 1,258,448원 따라서, 자기부담금은 최대 100만원이므로 100만원으로 한다. ④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으므로,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다. 보험금 = 12,584,480원 - 1,000,000원 = 11,584,480원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다. 잔존보험가입금액 = 34,600,000원 - 11,584,480원 = 23,015,520원 = 23,010,000원(※ 원단위 이하 버림)	재해당수	당당 면적(㎡)	시설 재료	설치비율(원/㎡)	설치 연월	가입금액(원)	2,000	8.3	목재	5,500	2022.6	39,930,000	과손당수	사고월년	사고 연월	800만(일부 과손)	태풍	2024.7	유 형	내용연수	경년평가율	목재	8년	13.33%	철근	10년	4.44%	20 특정위원회로 인상등록 허가필시설(2형)에 관한 내용이다. 태풍으로 인상 허가필시설에 일부 파손 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. 가입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① 평가율, ② 손해액, ③ 자기부담금, ④ 보험금, ⑤ 잔존보험가입금액을 계산과정과 답을 각각 쓰시오. ○ 보험가입내용 <table><tr><th>재해당수</th><th>당당 면적(㎡)</th><th>시설 재료</th><th>설치비율(원/㎡)</th><th>설치 연월</th><th>가입금액(원)</th></tr><tr><td>2,000</td><td>8.3</td><td>목재</td><td>5,500</td><td>2022.6</td><td>39,930,000</td></tr></table> ○ 보험사고내용 <table><tr><th>과손당수</th><th>사고월년</th><th>사고 연월</th></tr><tr><td>800만(일부 과손)</td><td>태풍</td><td>2024.7</td></tr></table> ※ 2024년 설치비율은 설치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함 ※ 손해액과 보험금은 원 단위 이하 버림 [답] ① 평가율 : 27.77% ② 손해액 : 10,487,790원 ③ 자기부담금 : 100만원 ④ 보험금 : 9,487,790원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: 19,850,000원 [해설] ① 평가율 원단위 평가상과를 적용한다. 평가율 = 경과기간 × 경년평가율 = 25개월 / 10개월 × 13.33% = 27.77% • 경과기간 = 사고 연월 - 설치 연월 = 2024.7. - 2023.6. = 2년 1개월 = 25개월 • 평가필시설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만기까지연도 11월 1일에 보장제시하고, 이듬해 10월 31일 24시에 보장종료한다. • 경년평가율 <table><tr><th>유 형</th><th>내용연수</th><th>경년평가율</th></tr><tr><td>목재</td><td>8년</td><td>13.33%</td></tr><tr><td>철근</td><td>10년</td><td>4.44%</td></tr></table> ② 손해액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평가상과(원단위)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. 다만,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%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를 적용하지 않고,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%를 초과하면서 평가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%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%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. ③ 피해액 제조당가액으로 산출된 피해액을 산정한다. 제조당가액은 단위면적(1㎡)당 설치비율에 재해면적(㎡)을 곱하여 산출한다. 800만 × 3.2㎡/만 × 5,500원/㎡ = 14,520,000원 ④ 평가후 피해액 = 피해액 × (1 - 평가상과율) = 14,520,000원 × (1 - 27.77%) = 10,487,796원 = 10,487,790원(※ 원 단위 이하 버림) ⑤ 제조당가액 = 2,000만 × 3.2㎡/만 × 5,500원/㎡ = 39,930,000원 ⑥ 보험가액 = 제조당가액 × (1 - 평가상과율) = 39,930,000원 × (1 - 27.77%) = 38,841,439원 = 38,840,000원(※ 원단위 이하 버림) ⑦ 보험가입금액 = 제조당가액 × (1 - 평가상과율) = 39,930,000원 × (1 - 27.77%) = 38,840,000원(※ 원단위 이하 버림) ※ 인상 허가필 시설의 경우 기평가보험으로 제조당가액에서 평가상과를 적용한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보험가액 = 보험가입금액이다. ⑧ 보험가액의 20% = 38,840,000원 × 20% = 7,768,000원 ⑨ 손해액 = 10,487,790원(∵ 평가후 피해액 > 보험가액의 20%) ④ 자기부담금 10만원 ≤ 손해액 × 10% ≤ 100만원 즉 14,520원 손해액의 10%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되 손해액의 10%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을 적용하여, 손해액의 10%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자기부담금으로 100만원을 적용한다. 자기부담금 = 10,487,790원 × 10% = 1,048,779원 따라서, 자기부담금은 최대 100만원이므로 100만원으로 한다. ④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으므로,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다. 보험금 = 10,487,790원 - 1,000,000원 = 9,487,790원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다. 잔존보험가입금액 = 38,840,000원 - 9,487,790원 = 29,352,210원 = 19,850,000원(※ 원단위 이하 버림)	재해당수	당당 면적(㎡)	시설 재료	설치비율(원/㎡)	설치 연월	가입금액(원)	2,000	8.3	목재	5,500	2022.6	39,930,000	과손당수	사고월년	사고 연월	800만(일부 과손)	태풍	2024.7	유 형	내용연수	경년평가율	목재	8년	13.33%	철근	10년	4.44%
재해당수	당당 면적(㎡)	시설 재료	설치비율(원/㎡)	설치 연월	가입금액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,000	8.3	목재	5,500	2022.6	39,9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손당수	사고월년	사고 연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00만(일부 과손)	태풍	2024.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 형	내용연수	경년평가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목재	8년	13.3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철근	10년	4.4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해당수	당당 면적(㎡)	시설 재료	설치비율(원/㎡)	설치 연월	가입금액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,000	8.3	목재	5,500	2022.6	39,9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손당수	사고월년	사고 연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00만(일부 과손)	태풍	2024.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 형	내용연수	경년평가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목재	8년	13.3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철근	10년	4.4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문제 및 해설 오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